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·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·단체를 추가함(안 제17조 제1항제12호 다목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